| | |
|---|---|
| 의안번호 | 2216681 |
| 의 뢰 인 | 정태호 의원 |
| 회 답 일 | 2026. 2. 20. |
| 추계번호 | 26A0805 |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및 사업관리단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자본금 출자 등을 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1조 1,014.2억원, 2030년 14.8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 71억원(연평균 6,014.2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 구 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연평균 |
|---|---|---|---|---|---|---|---|
| 사업관리위원회 설치(안 제7조) | 0.1 | 0.1 | 0.1 | 0.1 | 0.1 | 0.6 | 0.1 |
| 사업관리단 설치(안 제10조) | 14.1 | 13.5 | 13.9 | 14.3 | 14.7 | 70.3 | 14.1 |
| 한미전략투자공사 자본금 출자 (안 제16조) | 11,000 | 9,500 | 9,500 | - | - | 30,000 | 6,000 |
| 합계 | 11,014.2 | 9,513.6 | 9,514.0 | 14.4 | 14.8 | 30,071.0 | 6,014.2 |

주: 1.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 발생할 수 있음
2.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 등을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Ⅱ.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7조<br>(사업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전략적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를 둠 | 의무 규정 |
| | 안 제9조<br>(사업관리위원회 구성) |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함<br>-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br>-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br>-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 1인 | |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2 | 안 제10조<br>(사업관리단) | ○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단'을 둠 | 의무<br>규정 |
| 3 | 안 제12조<br>(한미 협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 대미 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br>– 위원은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 및 미국 상무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 의무<br>규정 |
| 4 | 안 제13조<br>(설립) | ○ 한미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함 | 의무<br>규정 |
| | 안 제16조<br>(자본금) | ○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함 | |
| 5 | 안 제39조<br>(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 ○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함 | 의무<br>규정 |
| | 안 제40조<br>(기금의 재원) | ○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br>– 공사의 출연금<br>– 위탁자산<br>–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br>– 정부로부터의 차입금<br>– 법인, 조합, 단체 등의 출연금<br>–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익금 등 | |
| 6 | 안 제50조<br>(벌칙) |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br>○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 행위 등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의무<br>규정 |
| | 안 제51조<br>(과태료) | ○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연번 | 재정수반요인 | 추계 여부 |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
|---|---|---|---|
| 1 | 안 제7조(사업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 |
| | 안 제9조(사업관리위원회 구성) | | |
| 2 | 안 제10조(사업관리단) | ○ | |
| 3 | 안 제12조<br>(한미 협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 | ○ 선언적·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 |
| 4 | 안 제13조(설립) | ○ | |
| | 안 제16조(자본금) | | |
| 5 | 안 제39조(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 × | ○ 선언적·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 |
| | 안 제40조(기금의 재원) | | |
| 6 | 안 제50조(벌칙) | × | ○ 미대상(재정수입의 증가) |
| | 안 제51조(과태료) | × | ○ 미대상(재정수입의 증가)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부분에 한해 추계함

○ 본 추계는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현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라 함)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위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회의비 등의 비용으로 가정

○ 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은 제정안과 유사성이 있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1]의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과 동일한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

- 위원회 위원은 공무원과 민간위원 5:5 비중(각각 10인)으로 될 것으로 가정
- 개최 횟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연간 개최 횟수를 고려하여 연간 4회로 가정
- 민간위원 1인당 회의 참석비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민간위원 1인당 회의비 30만원으로 가정

❑ 사업관리단의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은 재정경제부의 '경제공급망기획관' 운영사례를 참고로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추계

○ 사업관리단의 인력구성은 '경제공급망기획관' 정원기준 20명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

- 고위공무원단 1명, 5급 이상 16명, 6급 이하 3명

○ 인건비는 '경제공급망기획관' 직급별 평균 인건비(2024년 예산 기준)와 동일할 것으로 가정

○ 기본경비는 「2026년도 산업통상부 예산자료」을 참고하여 인건비의 7.5%로 가정

○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정한 1인당 자산취득비를 적용하며, 자산취득비는 설립 첫해인 2026년에만 발생한다고 가정

❑ 한미전략투자공사 자본금(3조원)은 정부가 3년에 걸쳐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가정

○ 정부의 자본금 출자는 설립 첫해 1조 1,000억원(2026년 예산), 이후 2개년에 걸쳐 각각 9,500억원 출자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 부칙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1)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국제정세 및 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전제로 중·장기 정책 방향과 개별 사업 집행을 연계·조정하고, 대외 협의와 재정·투자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어 미국의 관세·산업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한미 전략투자 정책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관리위원회와 유사한 것으로 보았음(「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7조~제10조 내용 참조)

##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가. 사업관리위원회 설립(안 제7조)

❑ 사업관리위원회 설치·운용 비용 단가 등 산정

○ (구성) 제정안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였고, 본 추계에서는 위원회 구성이 공무원과 민간위원 각 5:5 비중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라 민간위원을 10인으로 전제하여 추계

- 동 법안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1인 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횟수) 회의 개최 횟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연간 회의 개최 횟수를 고려하여 연간 4회로 가정

-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2024년 6월 27일 첫 구성되었으며, 회의 개최는 2024년 3회, 2025년 4회로 나타남

[표 2]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연간 회의 개최 현황: 2024~2025년

(단위: 회)

| 구분 | 2024 | 2025 |
|---|---|---|
|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 | 3 | 4 |

주: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2024.6.27. 첫 구성
자료: 재정경제부 답변자료

○ (단가)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비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민간위원 회의비를 감안하여 회당 30만원으로 가정하여 추계

[표 3]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민간위원 1인당 회의 참석비 : 2024~2025년

(단위: 만원)

| 구분 | 2024 | 2025 |
|---|---|---|
| 민간위원 1인당 회의비 | 30 | 30 |

자료: 재정경제부 답변자료

❑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200만원, 2030년 1,2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6,000만원(연평균 1,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사업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연평균 |
|---|---|---|---|---|---|---|---|
| 위원회 설치 및 운영<br>(회의수당×인원×횟수) | 12 | 12 | 12 | 12 | 12 | 60 | 12 |

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단가는 회의수당 30만원, 민간위원 10명, 회의 개최횟수 연 4회

## 나. 사업관리단 설치 등(안 제10조)

❑ 사업관리단 설치 및 운용에 따른 비용 단가 등 산정

○ (인건비)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현재 경제공급망기획관 정원 20명의 직급별 평균 인건비(2024년 예산기준)와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2026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적용,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인건비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정한 공무원 임금 평균 상승률(3.0%)을 적용하여 산정

[표 5] 경제공급망기획관 인력구성 및 직급별 평균 인건비 현황: 2024년 예산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 고위공무원 나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 인원(A) | 1 | 3 | 13 | 2 | 1 |
| 1인당<br>연봉액(B) | 98.5 | 78.1 | 51.2 | 53.9 | 33.0 |
| 인건비<br>(=A×B) | 98.5 | 234.3 | 665.9 | 107.8 | 33.0 |

주: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성과급,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된 금액. 다만, 6급 이하는 명절휴가비 및 정근수당도 포함됨

자료: 재정경제부 답변자료

○ (기본경비) 기본경비는 「2026년도 산업통상부 확정예산」을 참고하여 인건비의 7.5%로 가정하며,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자산취득비) 기관설립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정한 2026년 1인당 자산취득비 4,981천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사업관리단을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4.1억원, 2030년 14.7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70.3억원(연평균 14.1억원)으로 추계됨

[표 6] 사업관리단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연평균 |
|---|---|---|---|---|---|---|---|
| 인건비 | 12.1 | 12.5 | 12.9 | 13.3 | 13.7 | 64.5 | 12.9 |
| 기본경비 | 0.9 | 0.9 | 1.0 | 1.0 | 1.0 | 4.8 | 1.0 |
| 자산취득비 | 1.0 | - | - | - | - | 1.0 | - |
| 합 계 | 14.1 | 13.5 | 13.9 | 14.3 | 14.7 | 70.3 | 14.1 |

주: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 발생할 수 있음

## 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자본금 출자(안 제16조)

❑ 한미전략투자공사 자본금(3조원)은 정부가 3년에 걸쳐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동 법안의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 가운데 하나가 공사의 출연금인 점을 감안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 자본금(3조원)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정부의 자본금 출자는 설립 첫해 1조 1,000억원(2026년 예산), 이후 2개년에 걸쳐 각각 9,500억원 출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표 7] 한미전략투자공사 자본금 출자 추정 : 2026~2028년

(단위: 억원)

| 구분 | 2026 | 2027 | 2028 | 합계 |
|---|---|---|---|---|
| 자본금 출자 | 11,000 | 9,500 | 9,500 | 30,000 |

주: 2026년은 예산액

자료: 재정경제부 답변자료

# Ⅳ.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Ⅴ. 작성자

❑ 성명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 추계세제총괄과 | 최천규 | 권아영 |

❑ 대표연락처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 최천규 | 02-6788-4653 | choi1009@assembly.go.kr |